

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05 | 【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】 |
|          |      | <b>검 토 보 고 서</b>      |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3.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참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연도말 기금조성액: 1,917,334천원

(단위 : 천원)

| 2025년도 말<br>조성액 ㉠ | 2026년도 조성계획 |         |              | 2026년도 말<br>조성액<br>㉡ = ㉢ + 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수입 ㉢        | 지출 ㉣    | 증감 ㉤ = ㉢ - ㉣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,074,474         | 72,010      | 229,150 | △157,140     | 1,917,334                    |

나. 수입계획: 72,01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편성목                | 수입액    | 수입내역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     | 72,010 |                    |
| 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  | 59,100 | 기금 적립금 및 운용통장 이자수입 |
| (216-02) 융자금회수이자수입 | 3,310  | 사업단 융자금 이자 수입      |
| (224-07) 그외수입      | 2,300  | 내일키움 통장 반환금 등      |
| (713-01) 민간융자금회수수입 | 7,300  |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     |

다. 지출계획: 229,15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편성목               | 수입액     | 수입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               | 229,15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201-02) 공공운영비    | 150     | 등기송달료 등                      |
| (301-02) 사회보장적수혜금 | 7,200   |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              |
| (307-11) 사회복지사업보조 | 71,800  | 맞춤형 직무교육, 우수참여자 할량캠프 사업 등 추진 |
| (402-03) 민간위탁사업비  | 50,000  | 자활기업 및 사업단 활성화 지원            |
| (501-01) 융자금 대여   | 100,000 |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                |

#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 및 제14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
-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
  -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1,003천원이 증액된 2,146,484천원으로 편성되었음
  -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
예치금 회수 42,053천원 증액,  
융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3,150천원 감액,  
공공예금 이자수입 7,900천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31,00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
  -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
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에 67,994천원 증액

예치금인 보전지출은 36,991천원 감액으로  
전년대비 31,00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

- 본 기금 운영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 
조성과 복지증진 사업에 편성되어 운용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 
없는 것으로 판단됨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**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4.<삭제 2016.12.30>
- 5.<삭제 2016.12.30>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 구청장은 기금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.